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민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710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4월 03일

발 의 자: 최민규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원중,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남궁역, 남창진,  
박상혁, 박 석, 박영한,  
박춘선, 서상열, 송경택,  
신동원, 심미경, 옥재은,  
유만희, 윤기섭, 이경숙,  
이민석, 이병운, 이숙자,  
이승복, 임춘대, 장태용,  
채수지, 최윤희,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38  
명)

## 1. 제안이유

- 최근 연인을 상대로 한 데이트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은 제한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도 미비한 상황이라 피해자들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지원방안도 부족한 실정임.
- 이에 서울시 차원에서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데이트폭력에 관한 정의를 신설함 (안 제2조제3호)
- 나. 데이트폭력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14조의4)

## 3. 참고사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 첨부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데이트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말한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데이트폭력피해자 지원) 시장은 데이트폭력피해자의 적절한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지원사업
2. 상담·의료·심리 치료 프로그램 지원사업
3. 법률상담 지원사업
4. 피해 관련 관계 기관에 긴급응급조치·보호 요청 지원
5. 데이트폭력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지원정책 개발 지원
6.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략)</p> <p><u>&lt;신설&gt;</u></p>   <p>3. ~ 6. (생략)</p> <p><u>&lt;신설&gt;</u></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데이트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말한다.</u></p> <p>4. ~ 7.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p> <p><u>제14조의4(데이트폭력피해자 지원) 시장은 데이트폭력피해자의 적절한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u></p> <p><u>1.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지원사업</u></p> <p><u>2. 상담·의료·심리 치료 프로그램 지원사업</u></p> <p><u>3. 법률상담 지원사업</u></p> <p><u>4. 피해 관련 관계 기관에 긴급 응급조치·보호 요청 지원</u></p> <p><u>5. 데이트폭력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지원정책 개발 지원</u></p>

6.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의4(데이트폭력피해자 지원)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하지만 확인결과 현재 기추진사업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교제폭력<sup>1)</sup> 피해자 상담·심리치료·보호조치<sup>2)</sup> 등의 경우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기시행(붙임1 참고)하고 있으며, 데이트폭력 인식개선 홍보사업 또한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기추진(붙임2 참고)하고 있음
  
- 다만 향후 기시행 사업을 확대(단독사업)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참고로 과거 단독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였던 2022년도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사업(붙임3 참고) 예산은 18,300천원(사업비 15,000천원, 운영비 3,300천원)이었음

##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추 계 분 석 관	손제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교제폭력 : 현재 연인 관계이거나 과거 연인이었던 관계(intimate relationship)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통제를 시도하는 일련의 행위와 그 과정을 통칭  
2) 데이트폭력으로 위협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가해자에게 경고, 순찰강화, 임시숙소안내, 112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 위치추적장치 제공 등을 신청할 수 있음

### 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가족다문화담당관:이정옥☎2133-8680 가족지원팀장:최희곤☎8690 담당:박재은/윤나영/윤나래☎8691/8692/8693

#### □ 사업목적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지원사업 운영·지원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신회복 및 자립능력 고양

####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사업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운영·지원  
피해자 대상 자립지원금·월세·아이돌봄 등 자립지원
- 시설현황 : 총 24개소
  -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1) : 365일 24시간 접수·상담, 기관연계, 긴급구조지원 등
  - 상 담 소(11) : 가정폭력 피해상담, **의료·법률지원 연계**, 가정폭력 예방 홍보 등
  - 보호시설(12) : **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치료, **의료·법률지원**, 직업훈련·자립지원 등
- 소요예산('24년) : **10,565백만원** (국·시비 각 50%, 처우개선비 시비 100%)

#### □ 추진실적('23.12월말 기준)

- 1366 : **상담 31,176건**(가폭 12,041 성폭 2,162 **교계폭력 906** 스토킹 1,274, 일반상담 9,848 등), **긴급피난 245명**
- 상담소 : **57,579건**(심리정서 45,190, **법률 1,437** 의료 449, 입소연계 289 등)
- 보호시설 : **현원108명/72,283건**(심리정서 24,443, **법률 596**, 의료 4,169, 자립지원 27,428 등)

자료 :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정책실) 발췌



# '24년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사업계획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조·보호 또는 상담 등을 지원하여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 I

###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 '24년 가정폭력·스토킹방지 피해자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통보(수정)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129, '23.12.28.)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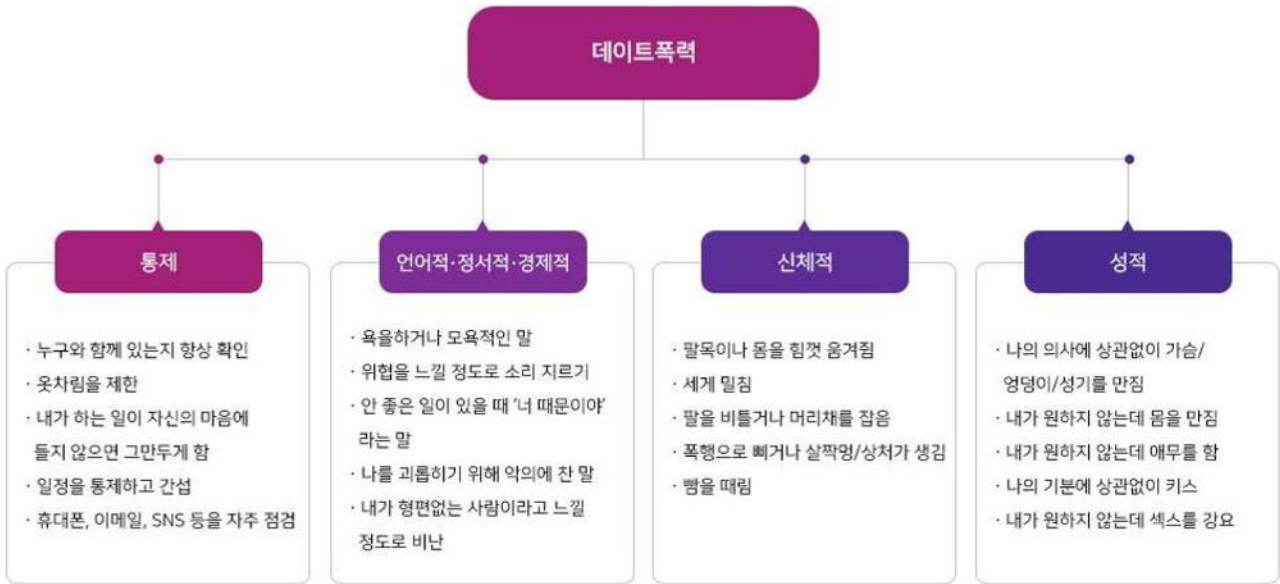
- 사업기간 : 2024. 1. 1.~ 12. 31.
- 사업내용 : 인건비·운영비,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유지비, 기능보강비 등
- 운영예산 : 총 1,386백만원 \*기능보강비 포함 및 계약심사 반영  
※ 2024년 1366서울센터의 총예산 1,386백만원중 인건비 비중 80.8%
- 예산교부 : 1366 서울센터 청구에 의거 지정계좌로 입금(분기별)

#### 《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개요 》

- 소재지 :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 최초설치 : 1998. 1. 1
- 수탁기관명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 위탁기간 : '24.1.1.~'28.12.31.
- 조직구성 : 5개팀 22명
  - 센터장\*\*\*\*\*
  - 인 력 : 22명(센터장 1, 사무국장1, 팀장5명, 상담원 14명, 경찰청희망센터 파견상담원 1명)
- 주요사업 : 24시간 Hot-Line운영, 긴급피난지원,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홍보 등

자료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24년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사업계획(가족다문화담당관-1662) 발췌

## 데이트폭력의 유형



## 데이트폭력 지원 체계



자료 :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홈페이지(<https://seoul1366.or.kr/>) 발췌

[붙임2] 2024년 서울시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전환사업)사업 예산 (본 안 제14조의4 관련)

□ 사업목적

- 성·가정폭력,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활동·운영 및 여성청소년 기능 치안 역량 강화
- 전국 자치경찰제 시행('21. 7월~)과 서울시 소속 신설된 자치경찰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으나 예산·첨단장비 등 자치사무경찰의 행정 지원체계 강화로 '시민이 안전한 서울시' 구축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4.1.1.~2024.12.31.
- 사업수행주체 : 서울경찰청·경찰서(31개서) 여성청소년과 / 자체수행
- 사업의 주요내용 : 내부역량 및 공동체 치안 강화,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 예방홍보 활동 전개, 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 산출근거

(단위: 천원)

과목구분	2024년 예산내역	
사무관리비	○ 여성청소년 보호 활동 홍보 및 지원	= 176,840천원
	- 피해자 보호기관 희망센터 운영	= 1,200천원
	100,000원*12회	=
	- 여성청소년 채피언 인증패 제작	= 2,940천원
	2,940,000원*1식	=
	- 스토킹사건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전문가 참여수당	= 55,800천원
	150,000원*12회*31개서	=
	- 사회적약자 범죄 예방 홍보물품 제작	= 108,500천원
	▷ 서울경찰청)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홍보물품 제작	= 31,000천원
	31,000,000원	=
	▷ 경찰서)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홍보물품 제작 등	= 77,500천원
	2,500,000원*31개서	=
	- 으뜸파트너 인증패 제작 및 행사비용 등	= 8,400천원
	▷ 으뜸파트너 인증패 제작	= 2,400천원
	200,000원*6개*2회	=
• 플래카드	= 960천원	
6개 단체*80,000원*2회	=	
• 홍보물품(방향제, 디퓨저 등)	= 3,300천원	
55,000원*30명*2회	=	
• 포토월(서울청 로비제작)	= 1,740천원	
870,000원*2회	=	
○ 범죄예방 안심물품 지원	800,000천원	
800,000,000원		

□ 향후 기대효과

- 공동체 치안 및 내부역량 강화,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 예방홍보 활동 전개
-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근절 및 예방을 선제적 활동에 기여
- 여청수사 등 범죄에 대한 신속한 출동 및 피의자·피해자 조사 등 2차 범죄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 서울시민 안전 확보
- 전국 자치경찰제 시행('21. 7월~)과 서울시 소속 자치경찰위원회가 신설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예산·첨단장비 등 지원 미비로 자치경찰자치사무 담당 경찰관들의 불만이 컸으나 서울시의 차량 지원으로 내부 만족도 향상 기대

자료 : 2024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설명서 발췌

-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

# 2022년도 사업 추진 계획

급증하는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와 시민 인식개선에 기여하고,  
데이트폭력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 I 사업현황

### 추진배경

- '20년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18,945건으로 '16년 신고 건수 대비 102.3%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 ※ 「2021 경찰백서」
  - '16년 9,364건 → '18년 18,671건 → '20년 18,945건 (102.3% 증가)
  - 피해 유형별로는 폭행·상해(70.3%), 체포·감금·협박(10.4%), 주거침입(8.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데이트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해 가·피해자·제3자 등이 폭력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측면 존재
-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지원과 더불어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요구

### 추진근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 '21년 사업 추진실적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예산	추진내용	수행기관
2021	데이트폭력 피해자지원	30	- 상담지원 147명 510건 - 법률지원 6건, 의료지원 8건 - 심리검사 113건 - 주변인 대상 교육 57명 - 인식개선 캠페인 6,047명(4기관, 12건)	한울가족 상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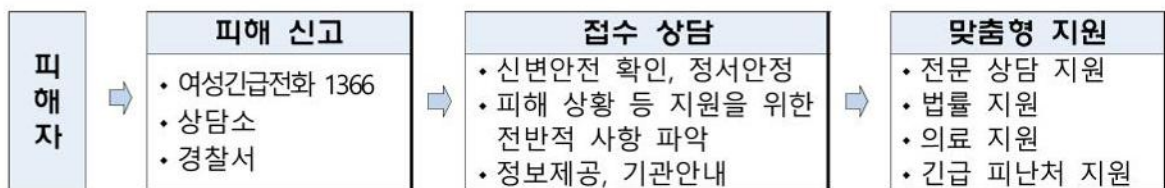
## II '22년 세부 추진계획

### □ 사업개요

#### ○ 세부 사업내용

- 데이트폭력피해자 심리치료(최대10회) · 법률 · 의료지원
- 피해자 치유회복 및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 주변인(가족, 동료 등) 대상 피해자지원방안 교육
- 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
- 기타 데이트폭력 피해자지원에 기여하는 사업

#### ○ 피해자지원 절차



- 달성목표 : 상담지원 250건 이상, 데이트폭력 인식개선 활동 5회 이상
- 추진방법 : 전문기관 공모 선정하여 사업 운영
- 소요예산 : 15백만원(시비 100%)

자료 : 2022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권익보호담당관-1306) 발췌